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6. 12. 24
내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6년 12월 21일

· 회부일자 : 1996년 12월 21일

다. 상정일자 : 제132회 정기회

· 제8차 내무위원회(1996. 12. 24)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의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내무국장 박경국)

가. 제안이유

'96 정기재물 조사결과 시·도 건의 사항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소모품의 범위 기준이 현재 취득단가 3만원 이하의 물품으로 가액기준이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어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현실화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소모품의 범위기간중 취득단가 상향조정

- 물품의 분류에서 비품과 소모품의 품종구분 기준중 소모품의 범위 기준을

"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가 3만원 이하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 파손되기 쉬운 물품" 을 " 취득단가 10만원 이하의 물품" 으로 단가 상향 조정

(전문위원 오 창 환)

충청북도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모품의 범위 기준을 현실화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그 주요 내용으로는

○ 소모품의 품목구분 기준중 내용연수 1년 이상으로 사용에 비례,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의 취득단가를 " 3만원 이하의 물품" 에서 " 10만원 이하의 물품" 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소모품의 취득단가를 현실화에 맞게 정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도 원안대로 의결 (참석인원 8인, 찬성 8인)

7. 소수 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신·구조문 대비표